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정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43

발의연월일: 2020. 9. 7.

발 의 자: 유정주·서동용·이동주

도종환 · 최종윤 · 김병욱

조승래 • 이상헌 • 신영대

임오경 • 박재호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9년 애니메이션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2018년 대비 11.2%로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 성장률 4.9%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, 세부 분야별로 비교해보더라도 출판 0.6%, 만화 6.2%, 영화 3. 2%, 광고 2.0%, 게임 5.1% 등 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.

이에 따라 2019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었고, 하반기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법적·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.

하지만 현행법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일부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(안 제4조 등).

법률 제 호

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
- 3.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제5조제1항 중 "육성하고"를 "보호·육성하고"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"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"을 "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.

제16조제5항 중 "연임할 수 있다"를 "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	제4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
수립·시행) ① (생 략)	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2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2.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법령
	및 제도의 개선
<u><신 설></u>	3.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지식재
	<u>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</u>
<u>2.</u> ~ <u>10.</u> (생 략)	<u>4.</u> ~ <u>12.</u> (현행 제2호부터 제1
	0호까지와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)	제5조(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)
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을	①
<u>육성하고</u> 지원하기 위한 시책	<u>보호·육성하고</u>
을 마련하여야 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(생	제6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	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
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	자치단체의 장은
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·연구기	
관(기업부설 연구기관을 포함	

한다),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 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

소하여야 한다.
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 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6조(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) ① 16조(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) (1)

- ~ ④ (생 략)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⑥ (생 략)

- ~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⑥ (현행과 같음)